

【 8 】 군정질문에 관한 건

발의년월일 : 1997. 9. 9.

발 의 자 : 박영원의원외 2인

□ 제안이유

군정 주요업무를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양 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진흥, 산업, 건설, 도시분야에 대하여 군수에게 질문코자 함.

□ 주요내용

붙 임 : 질문서 1부.

【 9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소하천 관리와 사용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읍·면에 위임하여 행정의 현지성을 높이고 행정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며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조례의 제명을 통일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96. 10. 29일과 '97. 7. 11일 2차례에 걸쳐 고시한 109개소 총연장 149.57㎢의 소하천에 대한

- 소하천관리, 유수의 점용허가, 토지의 점용허가
- 소하천 부속물의 신축·개축·변경허가
-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내용 공고
- 점용료등의 부과·징수, 점용료등의 감면등 총 14건이 위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존 공유수면관리법에 의거한 공유수면 관리사무중 읍·면에 위임해 처리하던 사무를 소하천 정비법 및 동법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우리군이 지정 고시한 109개 소하천에서의 위임사무를 정리하여 조례로 규정키 위함이고 관련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으로써 관계법령등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지난 6월 9일 공포된 양주군소하천점용료및징수조례시행규칙 제2조에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의 허가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당해 소하천을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이를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본조례 개정안에 대하여는 실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95. 12. 29 주차장법이 개정되고 '96. 6. 4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 근거하여 법 인용조항을 조례 내용과 일치시키고 동법에서 조례에 규정도록 한 부설주차장의 설치 및 기준의 범위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기준등에 관하여 그 내용을 현실에 맞게 신설코자 하는 안입니다.

실무과장의 설명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용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항 별표1에 공영노외주차장의 정기주차 차량에 대한 월 정기요금 징수근거 조문을 신설하고, 안 제3조 제3항은 장애인복지법 제16조를 근거로 장애인과 관련된 주차요금의 감면범위를 「장애인의 자가운전자 차량을 포함한」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으로 확대하고, 안 제18조의2 제1항에서 전용주차장 설치 의무대수도 상향조정 하였으며, 안 제5조외 9개조항에서는 주차장법과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합 불부합사항 및 서식등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3조 제1항에는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으로까지 확대하고, 동조 제1항 별표2에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를 시설물별로 세분화하는 한편 설치기준은 운동경기관람장, 업무, 종교시설 및 단독주택을 제외한 숙박, 의료, 관람집회, 판매, 위락시설등은 주차장법상 기준보다 강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는 주차대수 300대 이하 규모의 부설주차장을 시설물의 인근부지에 설치할 경우 인근부지의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서 종전에는 당해 건축물과 부설주차장간의 대지경계선이 직선거리 300m 이내만 허용하던 것을 도보거리 600m

와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면 인접 행정리 지역도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18조의 3은 주차장법 제19조의 3 규정에 의거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물의 종류를 별표3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규모는 주차대수 10대 이상인 주차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의 내용 및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리하고, 법에서 조례에 위임하여 규정토록 한 사항중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의 범위와 일반이용에의 기준과 별표4, 즉 안 제19조 관련 과징금 가감기준, 별표 5, 즉 안제20조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은 법상 기준에 따라 전국적으로 형평을 맞추고, 별표2, 안 제13조 제2항 관련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주차장법상 기준과 인근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군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기준을 설정한 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법상 기준 보다 강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는 최근의 추세를 감안 한다면 본규정이 과다한 행정규제가 아니냐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갈수록 심화되는 주차수요에 대처하고,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된 행위로서 법제정 취지상 문제점은 없으나, 동법시행령 제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군수는 당해 지역안에서 구역별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달리 정할수도 있으므로, 그동안 기존조례 시행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종합

해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구분하여 설치기준을 정하였음이 타당하지 않았나
하고 검토했습니다.

끝으로 본조례 개정안은 '96. 10. 7 사회과장으로부터 장애인 차량의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조례를 정비해 줄 것에 대한 협조사항을 수요하고 있으며,
'97. 1. 11일과 '97. 5. 13일 두차례에 걸쳐 각각 20일간씩 입법예고 절차
를 거쳐 오늘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양주군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관광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9월말 준공을 앞둔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사용에 따른
제반절차를 정하고 사용료 징수 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예술회관은 총사업비가 132억6,300
만원이고 앞으로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투자가 계속됨을 감안하면 사용료
징수조례 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고 이용객 편의와 경영관리에도 큰 효
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 목적에는 문화예술회관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근거를 제시하고
안 제2조의 사용범위는 대공연장과 소공연장등 기본시설과 조명·음향시설등 부속

설비로 하며, 안제3조 사용신청 및 허가에 있어서는 사용예정일 15일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문화관광사업소장에게 제출하고, 소장은 접수후 5일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 통지하여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규정과 사용허가 변경허가 등을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제4조는 사용허가의 제한에 있어서 공공시설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와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및 기타 회관의 유지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로 정하고, 안 제5조 허가의 취소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 시행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제6조 회관의 운영 위탁에 있어서는 회관의 일부를 개인 또는 단체, 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과 위탁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7조 사용할 시간 및 사용료에 있어서는 시설별 사용 시간과 사용료를, 안제8조 사용료의 감면등에 있어서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는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제9조 사용료의 납부에 있어서는 사용료를 사용 5일전에 납부하고 유료입장에 의한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경우에는 소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사항과 사용 종료일에 정산을 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안제10조 사용료의 반환은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안제12조 사용자의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주요시설에 대

한 주의의무 규정과 설비를 망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13조 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에 있어서는 사용허가를 받는자와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도할 수 없으며, 안제15조 관람료등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사용의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와 관람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6조 입장의 제한에 있어서 소장이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사항을 제시하는 사항이고, 제17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조례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에 있어서 공공시설을 일반예의 제공시 사용료 징수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 경우 이용주민에게는 재정적 부담을 주는 사안으로서 '97. 8. 4일부터 8. 23일까지 20일간 임명예고 절차를 거친바 있습니다.

한편, 본 조례안 내용구성에 있어서는 첫째, 안7조 사용할 시간 및 사용료와 관련하여 별표 내용은 시설별 사용료에 관한 내용이므로 “1 기본사용료”는 “1 기본시설 사용료”라 함이 타당하고, 둘째, 본 시설의 사용은 사전에 서면신청에 의거 그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바 사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사용이 결정되는 경우도 예상되므로 이 경우 과태료 징수 규정도 조례에 정하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본시설 설치에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향후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므로 시설사용료 규정은 철저히 지켜져야 할 것이며, 이와 동시에 본시설의 건전하고 다양한 활용을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외에 조례의 체계 및 자구예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광적면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29일 군수가 제출한 광적면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2의 규정에 의해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고, 주민공청회 및 공람공고를 통해서 주민들로부터 건의된 사항을 참고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본 재정비 계획안은 2006년까지 계획된 사업임을 감안해 주민들의 기대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으로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요 정비내용은

- 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등 용도지역 변경
- 6개소 120,730m²의 자연취락지구 신설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및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지구의 신설

- 도로의 재정비
 - 균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의 신설
 - 운동장, 공용의 청사, 학교등 공공문화복지시설을 신설, 변경, 폐지하는 방안으로 도시계획이 재정비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 이상입니다.

【 10 】 제60회 의회(임시회) 의사일정(변경)

□ 회 기 : '97. 9. 2 ~ 9. 11(10일간)

| 일 시 | 차수 | 부 의 안 건 | 비 고 |
|---------|----|---|-----|
| 9. 2(화) |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 회식 1. 제60회 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5. 양주군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6. 광적도시계획 재정비 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7.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현장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 |
| 9. 3(수) | 2 | <p>휴 회(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현장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마전간 도로 확·포장공사외 5건 | |